

제26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임헌호 의원 대표발의】



2025. 10. 20.

행 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경 과

의안 제611호로 2025년 10월 2일 임헌호 의원 외 6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5년 10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영등포구 소속 공무원 등과 구 산하기관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갑질 행위를 예방·근절하고, 피해자와 신고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함.

3. 주요내용

가. 신고·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안 제8조)

나. 신고자 및 피해자 보호(안 제10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2025.10.2.~2025.10.15.)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제정안은 우리 구(區) 소속 공무원 및 산하기관 직원 등이 직무상 권한이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을 예방하고, 피해자 및 신고자를 보호·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됨.

○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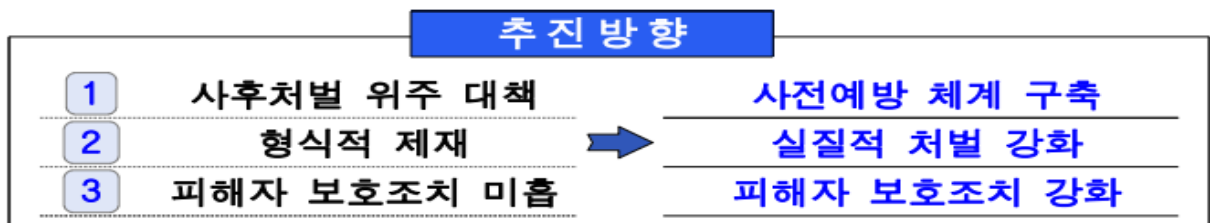
조	제 명	내 용
제1조	목적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여 상호 존중하는 공직사회 구현함을 목적
제2조	정의	공무원 등,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갑질 행위, 갑질 행위자, 피해자, 신고자 용어 정의
제3조	구청장의 책무와 대책 수립	구청장의 갑질 행위 근절 대책 의무 규정
제4조	실태조사	갑질 행위 피해 관련 설문조사, 징계·민원 사례 분석 등 가능
제5조	직장교육 의무화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등 연 1회 이상 교육 실시 의무
제6조	갑질 행위 피해 신고의 접수 등	누구든지 갑질 행위 피해 신고 가능 - 문서와 증거자료 첨부하여 신고 - 구술(口述)로도 가능
제7조	중복 접수의 처리	
제8조	신고·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갑질 신고·지원센터를 설치 운영 가능 - 전담 감사, 감찰 직원 배치 - 필요시 전문기관과 연계 가능
제9조	징계 및 인사상 불이익 처분 등	갑질 행위자, 은폐,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한 경우 징계 요구
제10조	신고자 비밀보장	신고자의 신분 공개, 암시 불가 - 위반 시 징계 등 필요 조치
제11조	신고자 및 피해자 보호	피해자와 신고자는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음
제12조	협조자의 보호	진술, 자료 제출 등 조사에 협조한 경우에도 비밀보장과 보호 조치 준용
제13조	보복행위 신고	신고자가 보복행위 당한 경우 감사부서에 신고 가능
제14조	허위신고	고의로 사실 왜곡, 조작, 거짓 신고 등의 경우 조례에 따른 보호 조치 받지 못함
제15조	포상	갑질 행위 근절에 공적 시 포상 가능
제16조	시행규칙	필요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

-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서는 실태조사 및 직장 내 교육 등 예방 관련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안 제14조에서는 신고, 조사, 그에 따른 보호 체계 등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음.

○ 검토 결과

- 본 제정 조례안은 「공무원 행동강령」,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등 상위법의 위임 범위 내에서 공직사회의 권한 남용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제도화한 것으로 상위법 규정에 근거하여 이를 조례로 구체화함으로써 우리 구(區) 내부의 청렴 문화 확산과 조직 신뢰성 제고가 기대되므로 입법 타당성이 인정됨.
- 아울러 서울시에서는 지난 9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인사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¹⁾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추진 방안으로 △사전 예방 체계 구축, △실질적 처벌 강화, △피해자 보호 조치 강화의 내용을 담고 있어 본 제정 조례안과 그 맥락을 함께 하고, 구체적으로는 그 내용에 괴롭힘 가해자에

1) 출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인사관리 강화 방안(서울시 인사과-40750호, 2025.9.29.)



대한 징계 수위를 높이도록 행정안전부에 건의할 계획을 담아
갑질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처리할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바,
시의적절한 제정이라고 여겨짐.

【서울시 직장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인사관리 방안】

○ 직장내 괴롭힘 **최저 징계기준 개정 건의**(서울시 → 행정안전부)

-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도 '**감봉**'으로 개정 건의

< 현행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 1] 징계기준 >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 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 인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 인 경우
7.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0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	기존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변경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 또한 상위법령들에서 부당한 직무행위나 비위 행위에 대한 신고
및 신고자와 피해자 보호 체계는 이미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본 제정 조례안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실행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한 성격을 가지므로 그 효과를 강화하는 의미를 지녀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짐.

참 고 자 료

1 지방공무원법

제72조(징계 등 절차)

- ① 징계처분등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가 한다. 다만,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된 하위직공무원의 징계처분등과 소속 기관(시·도와 구·시·군, 구·시·군)을 달리하는 동일사건에 관련된 사람의 징계처분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소속 인사위원회 또는 시·도의회 의장 소속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한다.

2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

제5조(징계의 감경)

-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6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그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 전의 공적은 감경 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공적에 대한 표창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행위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교육감 및 시·도의회 의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가. 6급 이하 공무원(일반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는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

나. 지방전문경력관 나군 및 다군

다. 연구사 및 지도사

라. 6급 이하 공무원의 보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

마. 6급 이하 일반임기제공무원(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중 가급 외의 공무원

사. 한시임기제공무원 중 5호 외의 공무원

3.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직

4. 「청백봉사상 운영규정」에 따른 청백봉사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

1의2.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2.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음주운전(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매매

5.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6.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22조에 따라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재산 등록 또는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7.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비위

7의2.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극행정(이하 이 조에서 "소극행정"이라 한다)

8.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소극행정은 제외한다)

9.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

10. 성 관련 비위나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에 대응하지 않거나 은폐한 행위

11. 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청탁이나 강요 등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채용 업무와 관련하여 비위행위를 한 경우

1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

1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14.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15.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0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